

산업별 신고오류 사례

- 항공 · 중공업 · 방위 분야 -

부산본부세관 성실신고지원팀



관세조사 사례 1

실제지급금액(기계설비비) 신고 누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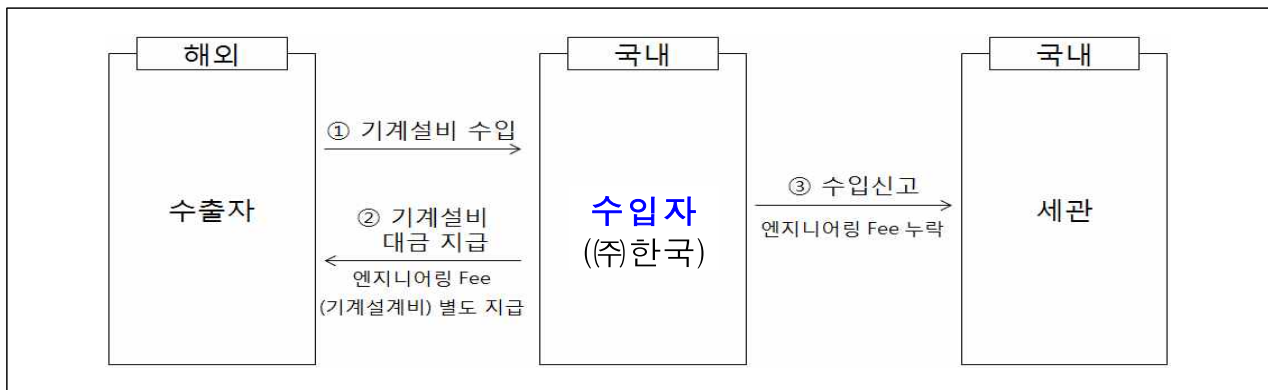
1. 심사 개요

○ 상 호: (주)한국

○ 참조산업: 건설기계 / 반도체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☒ 과세가격 ☐ 품목분류 ☐ 감 면 ☐ 환 급 ☐ 기 타



- (주)한국은 국내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설비를 수입하면서,
 - 해당 기계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Fee(기계설계비)를 기계설비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,
 - 수입신고시 기계설비 대금만 신고하고 별도 지급한 엔지니어링 Fee는 신고누락함

3. 조치사항

-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관세 00억 원, 부가가치세 00억 원 등 과세

4. 유의사항

- 수입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설계비 등의 엔지니어링 Fee는 실제지급 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됨(단, 수입 후 국내 설치 및 조립에 관계된 엔지니어링 Fee는 공제요소로서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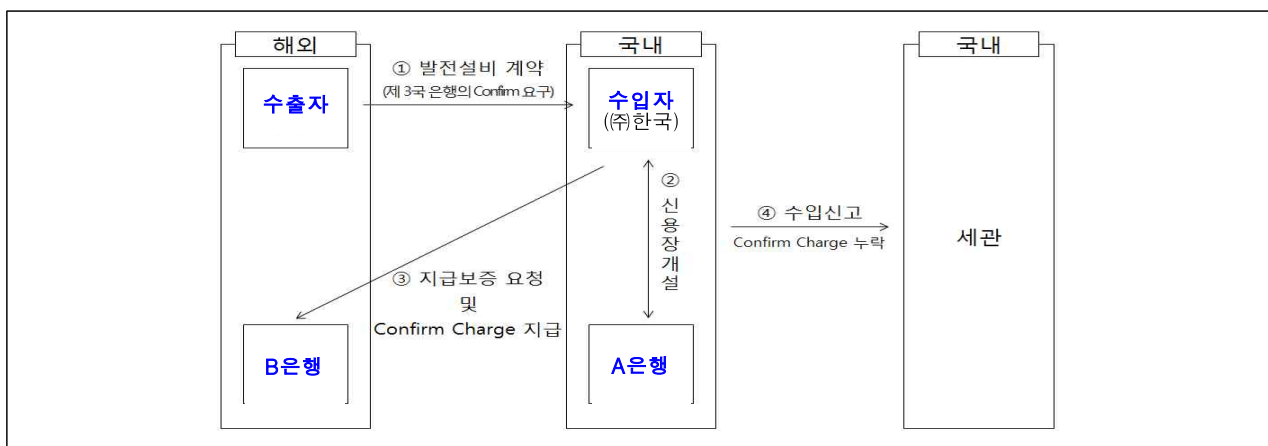
1. 심사 개요

○ 상 호: (주)한국

○ 참조산업: 중공업 / 기계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☒ 과세가격
 ☐ 품목분류
 ☐ 감 면
 ☐ 환 급
 ☐ 기 타



○ (주)한국은 해외에서 고가의 발전설비를 L/C 거래로 수입하면서

- 해외공급자가 대금회수 불능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L/C 개설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주는 Confirm을 요구하자
- 동사는 이를 수락하고 관련비용인 Confirm Charge를 제3의 은행에 지급하였으나 수입신고시 이를 누락

3. 조치사항

○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관세 00억 원, 부가가치세 00억 원 등 과세

4. 유의사항

○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융비용*을 수입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‘간접지급금액’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됨

* Confirm Charge는 대금회수 담보 목적의 판매자를 위한 금융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임

1. 심사 개요

○ 상 호: (주)한국

○ 참조산업: 주류 / 전 분야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☒ 과세가격 ☐ 품목분류 ☐ 감 면 ☐ 환 급 ☐ 기 타

- (주)한국은 해외 A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지불하여야 할 수출국내 운송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수입신고 가격에 미포함

3. 조치사항

-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관세 00억 원, 부가가치세 00억 원 등 과세
- 수출국내 운송비용 등은 수입물품의 제조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비용이며 본 건의 경우 실제지급금액 중 ‘간접지급금액’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

4. 유의사항

- ‘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’의 과세가격 포함여부
- ⇒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판매자가 부담했어야 할 원가성 금액을 수입 물품 대금 이외의 명목으로 전가시켰는지 검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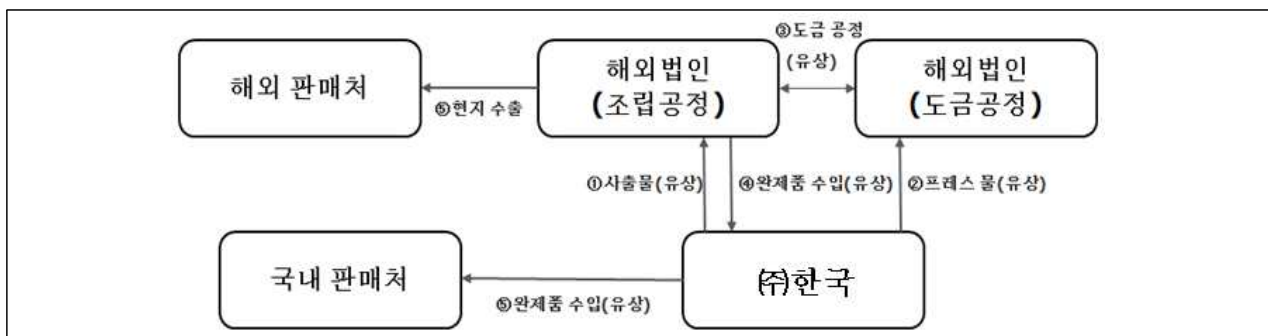
1. 심사 개요

○ 상 호: (주)한국

○ 참조산업: 전자·전기 / 전분야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■ 과세가격 □ 품목분류 □ 감 면 □ 환 급 □ 기 타



- (주)한국은 해외 현지법인에 원·부재료를 유상공급하고 가공·조립하여 완제품을 수입하면서
- 동일한 원재료를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하면서 국내로 재수입하는 원재료와 국외로 직수출하는 원재료의 코드를 별도 관리하는 등 수출가격을 이원화하고 일부 품목을 해외 판매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
- 한편, 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수입물품 관련 금형 가격을 과세가격에 신고누락

3. 조치사항

- 과세가격 신고 누락분(저가신고 및 생산지원비)에 대한 부족 관세 00억 원, 부가가치세 00억 원 등 과세

4. 유의사항

- 저가로 수출한 원재료(생산지원비) 과세가격 산정방법

⇒ 생산비용(구입비용) - 수출가격 + 운임

1. 심사 개요

○ 상 호: (주)한국

○ 참조산업: 중공업 / 기계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☒ 과세가격 ☐ 품목분류 ☐ 감 면 ☐ 환 급 ☐ 기 타

- (주)한국은 해양플랜트(off-shore plant)사업 수행을 위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선박기자재 관련 물품을 수입하면서
 - Royalty/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입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로열티를 신고 누락
 - 이와 함께 해외 물품공급자와 FCA조건 또는 EXW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별도로 지급했으나 운임 신고 누락

3. 조치사항

-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관세 00억 원, 부가가치세 00억 원 등 과세

4. 유의사항

-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충족하는 권리사용료의 누락 여부 등을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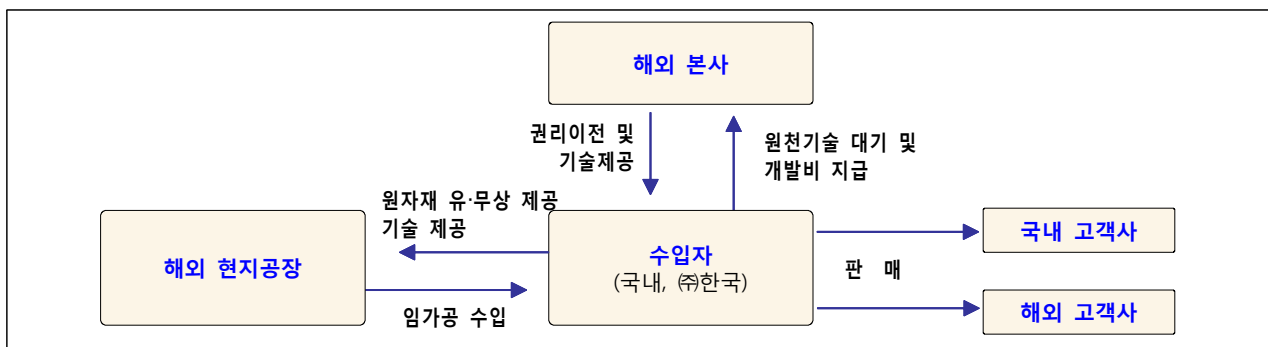
1. 심사 개요

○ 상 호: (주)한국

○ 참조산업: 기계 / 전 분야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■ 과세가격 □ 품목분류 □ 감 면 □ 환 급 □ 기 타



- (주)한국은 해외 현지공장(관계사)으로 원자재를 유/무상 수출 후 임가공 수입거래를 하며
 - 해외 현지공장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설계도면, 제작방법, 노하우 등을 제공
 - 해외 본사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물품은 없으나 본사에 제조 관련 원천기술사용료 및 개발비를 지급하면서도 해당 비용을 신고 누락

3. 조치사항

-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관세 00억 원, 부가가치세 00억 원 등 과세
 - 본사로 지급한 사용료 및 개발비 등은 해외생산에 필요한 용역분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생산지원비로 과세함

4. 유의사항

-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본사로 송금되는 로열티 성격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거래 상세내역을 확인하여 과세가격에 포함여부 결정

1. 심사 개요

○ 상 호: (주)한국

○ 참조산업: 전기·전자 / 전 분야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☒ 과세가격 ☐ 품목분류 ☐ 감 면 ☐ 환 급 ☐ 기 타

- (주)한국은 해외 본사가 설립한 국내 판매법인으로, 입찰용 및 일반용 2가지 형태로 물품 수입
 - ‘일반용’은, 국내시장 정보 등을 반영하여 (주)한국과 해외 본사가 협상을 통해 작성된 분기별 Price List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있으나,
 - ‘입찰용’은 (주)한국이 정부 입찰용으로만 한정하여 판매하라는 전제 하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

3. 조치사항

-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관세 00억 원, 부가가치세 00억 원 등 과세

4. 유의사항

- 수입물품을 판매자(수출자)가 용도 제한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불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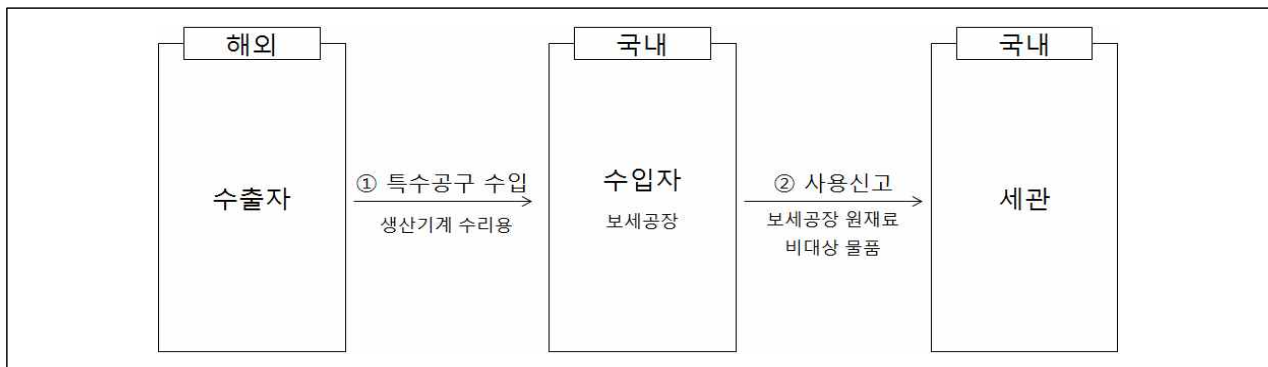
1. 심사 개요

○ 상 호: (주)한국

○ 참조산업: 중공업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☐ 과세가격 ☐ 품목분류 ☐ 감 면 ☐ 환 급 ☒ 기 타



- (주)한국은 국내 보세공장에서 수입원재료와 국내조달 원재료를 혼용하여 발전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,
 - 수리용 특수공구(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에 사용)를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면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공장 원재료로 사용신고함

3. 조치사항

- 수입신고 누락분에 대한 관세 00억 원, 부가가치세 00억 원 등 과세

4. 유의사항

- 보세공장에서 제품의 생산·수리·조립·검사·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⇒ 생산라인의 기계류에 투입되는 연료, 수리공구 등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(관세법시행령 제199조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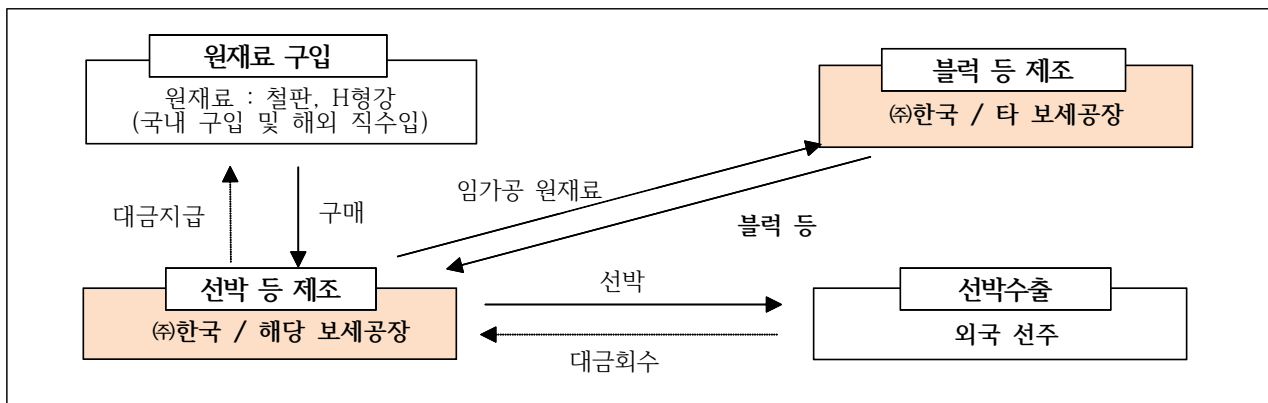
1. 심사 개요

○ 상 호: (주)한국

○ 참조산업: 조선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■ 과세가격 □ 품목분류 □ 감 면 □ 환 급 □ 기 타



- (주)한국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선박을 수주하여 보세공장에서 선박을 건조한 후 관세법 제188조에 따른 제품과세 방식을 채택해 수입통관함에 있어
 - 외국물품 혼용승인 비율 산정시 국내의 다른 보세공장에서 반입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나 내국 물품으로 착오 계산하여 과세가격에서 누락

3. 조치사항

-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부가가치세 00억 원 등 과세

4. 유의사항

- 제품과세시 과세가격 산정방법

⇒ 제품가격 × 외국물품가격 ÷ 전체원재료가격(외국물품가격+내국물품가격)

1. 심사 개요

- 상 호: (주)한국 ○ 참조산업: 반도체 / 기계 / 전기 / 중공업 / 광통신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☐ 과세가격 ☒ 품목분류 ☐ 감 면 ☐ 환 급 ☐ 기 타

- (주)한국은 반도체 기계에 쓰이는 오링(O-ring) 및 그 밖의 유사한 씰(seal), 개스킷(gasket) 등의 범용성 부분품을 반도체 기계 또는 그 부분품 (제8486호)으로 신고



3. 조치사항

- 품목분류 오적용에 따른 부족 관세 00억 원, 부가가치세 00억 원 등 과세
-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기타 기계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3926호에 분류

4. 유의사항

- 반도체 기계에 쓰이는 범용성 부분품의 신고세번 적정성 검토
- 관세율표 제16부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(제39류)는 제외

1. 심사 개요

○ 상 호: (주)한국

○ 참조산업: 기계 / 중공업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☐ 과세가격 ☐ 품목분류 ☐ 감 면 ☒ 환 급 ☐ 기 타

- (주)한국은 보세공장에서 건조하는 원유시추선 등에 설치할 부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원상태로 보세공장에 공급(반입)하고 「관세 환급특례법」에 따른 개별환급을 신청하면서
 - 환급담당 직원이 환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수입신고필증을 임의로 선택한 후, 수출물품의 실제 BOM(자재 명세서)에 임의 선택한 수입신고필증상의 물품 내역과 수량을 입력하고 소요원재료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소요량 계산서에 근거하여 환급받았고
 -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당환급 받음

3. 조치사항

- 관세 등 부당환급금 00억 원 환수

4. 유의사항

- 환급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생산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

1. 심사 개요

- 상 호: (주)한국
- 참조산업: 자동차부품 / 전 분야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☐ 과세가격 ☐ 품목분류 ☐ 감 면 ☒ 환 급 ☐ 기 타

- (주)한국의 지배기업인인 해외 본사(동사를 간접적으로 100% 소유)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으로 중소기업 제외 대상임
- (주)한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대 주주의 자산총액이 5천 억 이상이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따라서 환급 특례법 제21조(과다환급금의 징수) 제1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건을 추정

3. 조치사항

- 추정대상 간이정액환급액 및 가산금 00억 원 환수

4.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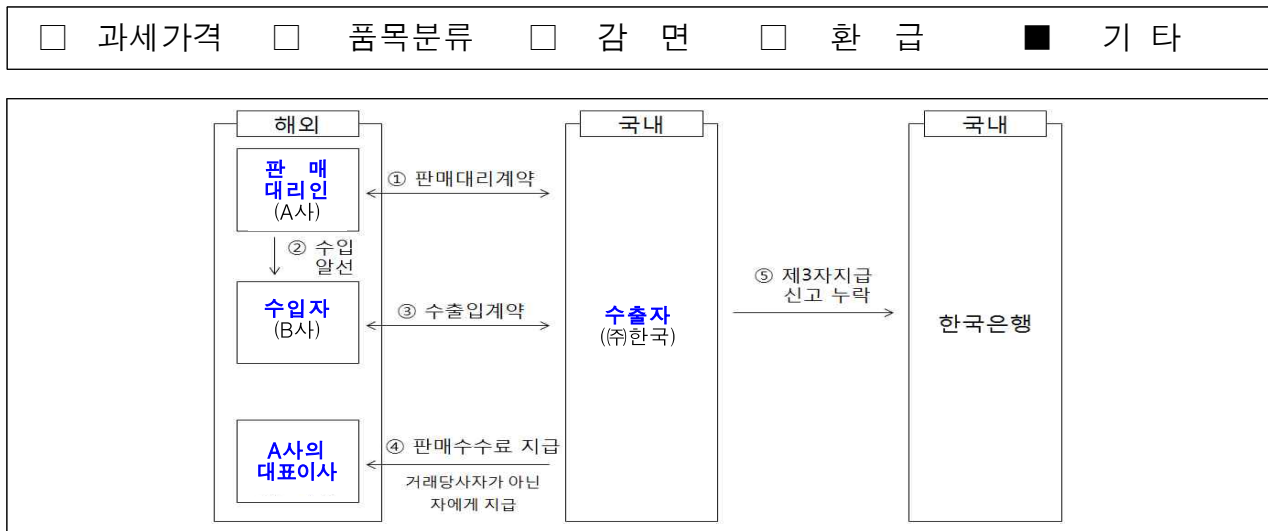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(재무제표상의 자산)이 5천억 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

1. 심사 개요

○ 상 호: (주)한국

○ 참조산업: 기계 / 전 분야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

- (주)한국은 해외 A사와 판매대리계약을 맺고 A사가 알선하여 준 업체 B사와 수출계약이 성사되면 판매수수료를 지급함
- 이 과정에서 (주)한국은 판매대리 계약상대방인 A사가 아닌 A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지 않음

3. 조치사항

- 제3자지급 미신고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

4. 유의사항

-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3자지급 신고를 하여야 함 ⇨ 기업과 기업사이의 계약시 당해 거래의 계약당사자는 기업임(기업명의로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송금시 제3자지급 신고필요)

1. 심사 개요

- 상 호: (주)한국 ○ 산 업: 금속 / 전 분야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☐ 과세가격 ☐ 품목분류 ☐ 감 면 ☐ 환 급 ☒ 기 타

- (주)한국은 철강 잉곳 등을 수입하여 선박용 엔진부품인 샤프트 등을 제조하여 해외에 수출하면서
- (주)한국은 수출물품의 클레임 등 신속대응을 위해 주 거래처가 소재한 국가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동 사무소 운영비 및 주재원 체재비 등을 해외사무소 명의로 아닌 동 해외사무소 직원 계좌로 송금

3. 조치사항

- 위반금액(00억 원)에 대한 과태료 00억 원 부과

4. 유의사항

-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게 송금해야할 비용을 타 명의로 송금한 경우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여야 함

1. 심사 개요

○ 상 호: (주)한국

○ 산 업: 금속 / 전 분야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☐ 과세가격 ☐ 품목분류 ☐ 감 면 ☐ 환 급 ☒ 기 타

- (주)한국은 STAINLESS STEEL TUBE 제조를 위한 철강재 봉 등을 해외 공급자로부터 수입
- (주)한국의 수입대금 결제는 대부분 신용장 결제방식으로, 일부 기계류 및 설비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선금금을 당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함께 사용
 - 수출제품 품질 미달로 인한 불량(채무) 등에 대하여, 차기 수출 대금(채권)에서 상계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미신고 상계처리

3. 조치사항

- 위반금액(00억 원)에 대한 과태료 00억 원 부과

4. 유의사항

- 수출클레임 상계 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리 외국환은행에 상계 신고 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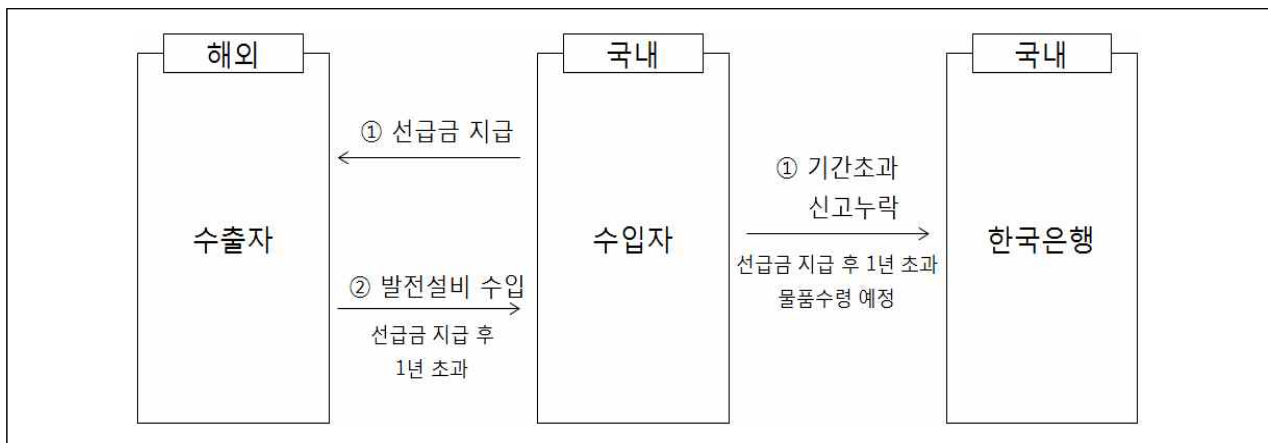
1. 심사 개요

○ 상 호: (주)한국

○ 산 업: 중공업 / 전 분야

2. 주요 적발내용 / 오류 유형

☐ 과세가격 ☐ 품목분류 ☐ 감 면 ☐ 환 급 ☒ 기 타



○ (주)한국은 해외에서 발전설비 관련 물품을 수입하면서,

- 수입물품의 수령 예정시기 보다 1년 전에 선금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선금금 지급이후 1년을 초과하여 물품을 수령했으나,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별도 신고(기간초과 지급)를 이행하지 아니함

3. 조치사항

○ 기간초과 지급 미신고액에 대해 과태료 00억 원 부과

4. 유의사항

-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해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 사후신고를 해야 함(단, 선박·철도차량·항공기·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제외)

1. 분류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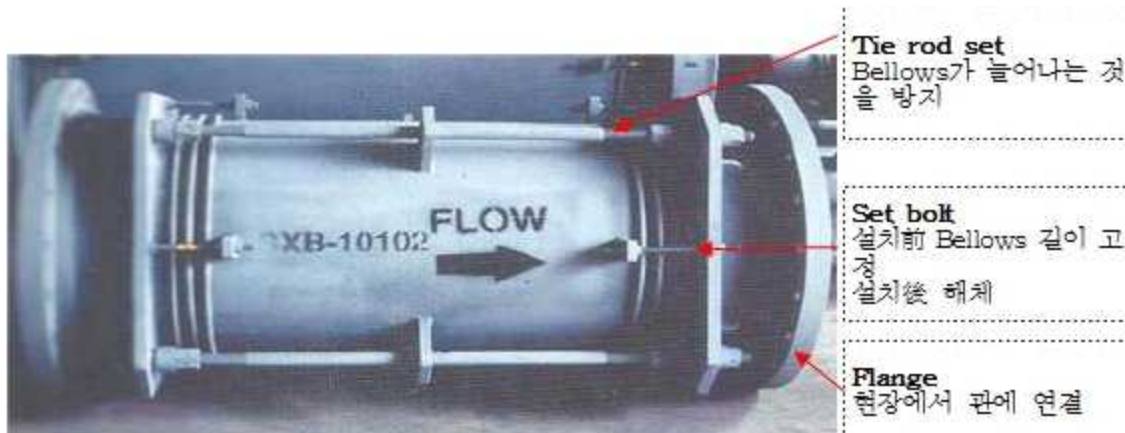
- ☐ 품 명: Flexible tubing of base metal; Connecting Fittings(Metal Expansion Joint); LATERAL TYPE
- ☐ 참조산업: 철강 · 비금속 / 플랜트

2. 물품 설명

-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벨로우즈* 가공한 물품으로 담수관, 송유관 등의 플랜트 배관 라인에 연결되어 사용

* [Bellows] 주름 잡힌 모양의 관

- (기능)배관의 신축성을 높여 열로 인한 배관의 팽창과 손상·이탈을 방지



3. 결정 사항

- ☐ 결정 세번: 8307.10-0000 ☐ 참조 번호: 품목분류2과-19483
- ☐ 경합 세번: 7307.29-0000 / 8307.10-000
- ☐ 결정 사유 (시행일자: 2016-12-23)

-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“비금속(卑金屬)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 (flexible tubing)(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)”가 분류되며,

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열 또는 반진동용의 길이가 짧은 플렉시블 튜빙(thermostatic bellows 또는 expansion joints로 알려져 있음)는 이 호에 분류된다.”라고 설명하고 있으며, “(2) 표면이 매끄러운 관의 변형에 의하여 제조된 파상형(波狀形)의 플렉시블 튜빙”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,
- 열로 인한 배관의 팽창과 손상·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파이프를 벨로 오즈 가공한 본건 물품은 제8307호의 플렉시블 튜빙에 해당됨
- 따라서, 본건 물품을 “철강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”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7.10-0000호에 분류함